

【늘푸른너싱홈 운영규정 개요】

시설명	늘푸른너싱홈											
운영주체	개인(정미순)					개원일자			2005. 01. 18			
홈페이지	http://www.egnh.co.kr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수정고개길 108											
제공급여 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49명			
입소대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으로 장기요양 시설 등급을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비대상자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 본관/ 신관 - 농협보험											
계약기간	입소일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 입소계약은 시설과 수급자 쌍방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며,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각 1부씩 보관.											
변경계약	등급, 수가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비용 변경시											
계약해지	이용자 및 보호자					자유의사(퇴소신청)						
	요양원					법률에 따른 심각한 감염병 질환 판정 시 타인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어르신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할 권리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월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어르신 병원 치료 시 동행 입원 시 간병 의무											
시설규모 및 현황	소유 형태					대지			건물 면적			
	개인소유					1,980㎡			1,386㎡			
	침실	사무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래밍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자원봉사자실	요양보호사휴게실	강당
	23	2	2	1	4	1	8	4	1	1	1	1

종사자 현황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협력병원 계약의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합 계
1	3	2	1	26	1	위탁급식		위탁	34

종사자 근무형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 보호사	
주5일	주5일	주5일	주5일	주5일	교대근무
09:00 ~ 18:00				08:00 ~ 18:00 09:00 ~ 익일09:00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 5등급
급여수가	90,450원/일	83,910원/일	79,240원/일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월30일 기준 396,000원 - 식비(1식) : 3,900원 / 간식비(1일2회) : 1,500원		
이미용비	무료(자원봉사자 희망봉사단), 외부미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적용		
상급침실비	1인실	10,000원	2인실 7,000원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병원진료 상황 발생시	◦ 보호자에게 연락 및 상황설명 후 조치 진행 ◦ 어르신께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응급상황 발생 시	◦ 응급처치 및 응급 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요양원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함
협력 의료기관	서울헤리티지의원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늘푸른너싱홈 급여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옷갈아입기도움	적절한 옷 준비 및 갈아입기 도움
	세면도움	세면준비 및 도움
	구강청결도움	양치질 준비 및 도움 틀니관리 구강청결
	신체청결도움	몸씻기 준비 및 도움
	머리감기도움	머리감기 침상 머리감기
	몸단장	면도 머리단장 손, 발, 청결유지
	식사도움	식사 준비 및 식사도움 경관영양
	체위변경	체위변경
	이동도움	보조기구 도움 보행 휠체어 이용한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도움	변기사용 침상배변·배뇨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케어도움
	관절운동지원	관절구축예방운동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	정서적 안정된 환경조성 및 행동변화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체조 및 동영상체조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신체기능에 따른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사회적응훈련	종교적욕구에 따라 예배, 봉성체 등
	가족대상 프로그램	매월 보호자참여 프로그램, 네이버카페운영등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에 따라 맞춤형 그룹 프로그램
	여가, 정서프로그램	신체기능에 따라 맞춤형 그룹 프로그램
	물리치료	주2회 정기적인 물리치료

늘푸른너싱홈 급여성서비스

건강 관리	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	정기적 활력징후 및 체온, 체중, 혈당 측정
	기초건강 관리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투약관리	약물 관리 및 정확한 투약관리
	감염간호	감염예방 교육 및 감염관리지도
	관절구축 예방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치매간호	치매 증상별 대처 및 투약 관리
	인지훈련	인지기능 평가
	의료기관 의뢰 등	계약의 진료지원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간호처치	호흡기 간호	가습기 및 흡인간호, 산소요법 기관절개관 관리
	욕창간호	욕창예방 및 욕창간호
	영양간호	영양상태확인 및 비위관 관리
	통증간호	통증사정 및 완화를 위한 약물요법
	배설관리	배뇨훈련 유치도뇨관 및 장루 관리 회음부 간호
	당뇨발 관리	당뇨발 관리 및 상처관리
	구강간호	구강간호
응급 서비스	응급간호	질식사 응급대처
		경련시 응급대처
		화상시 응급대처
		낙상시 응급대처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임종관리	임종간호	임종간호

	월	화	수	목	금
10:00~10:30	신체 아침체조2				신체 아침체조1
10:30~11:30					인지프로그램1 오감자극
14:00~14:30	여가C그룹 풍선배구	예배	인지프로그램2 인지치료	생신잔치 (월1회)	여가B그룹 낚시놀이
14:30~15:00		인지프로그램4			
15:00~15:30		인지워크북			
15:30~16:30				여가A그룹 늘푸른신문	

▶ 매월 가족지지프로그램 생신잔치,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 연간 가족참여프로그램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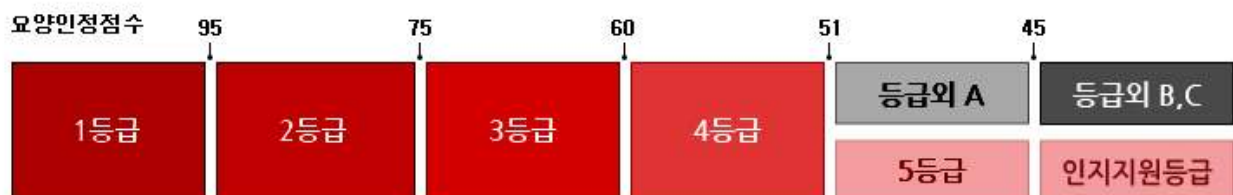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늘푸른너싱홈은

“ 치매, 중풍, 노년기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간호, 재활의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노인전문요양 시설**입니다.



만으로 십 오년 전 공기 좋고 양지바른 이곳에 큰 꿈을 가지고 늘푸른너싱홈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모셨고, 많은 어르신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가족들과 함께 울기도 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하였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질적인 삶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제가 늘푸른너싱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졌고, 제도권 하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해드리자**는 구호 하에 십오년 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셔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모시는 일과 가족들의 심리적 신체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의 고객들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늘푸른너싱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늘푸른너싱홈은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추구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존엄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요양문제로 고민하시는 가족들께서는 언제든지 늘푸른너싱홈에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너싱홈은 국가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매년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늘푸른너싱홈 원장
정미순 배상

늘푸른너싱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병)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병))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병)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병)은 계약체결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